

증평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013. 2. 22
조례 제474호]

일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 633호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증평균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도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등으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

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증평균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수도시설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수도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10. 3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켜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규모시설의 경우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30>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증평균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산정하고,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5. 출장경비는 차량비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의 경우에는 「증평균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산정

6. 지원경비는 지원한 사람이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원인자부담금 중 신·구 구경별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⑤ 공공주택 및 아파트 등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2의 13밀리미터 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⑦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

증평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30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 10. 3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총사업비}/\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

○ 증평읍 : $13,927,533,000\text{원} \div 24,000\text{m}^3/\text{일} = 580,000\text{원}$

○ 최근 시설확장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한 도안면은 총사업비 4,200,000,000원을 시설용량 3,000m³/일 나누어 단위사업비를 산출할 경우 140만원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우리군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재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평읍 단위사업비로 하고자 한다.

나. 신설·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예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text{인 } 1\text{일 최대급수량} = 1\text{인 } 1\text{일 급수량} \times \text{첨두계수}$

나. $1\text{인 } 1\text{일 급수량} = (\text{사용량}/\text{사용인구})/365$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사 업 종 류	부과대상 규모	수돗물 수요량 산출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계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일일 수돗물 사용계획량(m^3)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 중 건축연면적 $2,000m^2$ 이상	세대수 $\times$ 2.2인 $\times$ 0.2961 $\times$ 1.26
단독주택부지 건설사업	9호 이상의 단독주택부지	호수 $\times$ 2.2인 $\times$ 0.2961 $\times$ 1.26
숙박시설 건설사업	건축연면적 $600m^2$ 이상 객실 15실 이상	건축연면적(m^2) $\times$ 40 ℓ
교육연구시설·청소년 수련시설 건설사업	바닥면적 $2,000m^2$ 이상	건축연면적(m^2) $\times$ 25 ℓ
의료시설 건설사업	병원급 이상으로 건축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연면적(m^2) $\times$ 30 ℓ
판매·유통·영업시설	건축연면적 $1,000m^2$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1일 수돗물 사용계획량
기타 건축물의 건설사업	건축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연면적(m^2) $\times$ 20 ℓ
이설공사	이설공사	이설 공사비

-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
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주거시설의 세대별 인원은 적용연도의 세대별 평균인구수를 적용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설 및 일반건축허가시설 연면적
중 주차장 연면적, 창고시설 연면적(상수도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한정한다), 교
육시설 연면적(유치원, 초·중·고교시설에 한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거 등 송·배수시설을 신설할 경우 해당공사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 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 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 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 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 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

계량기 구경 (mm)	원인자부담금(원)	비고
13	60,000	
20	140,000	
25	240,000	
40	700,000	
50	1,200,000	
75	2,400,000	
100	4,000,000	
150	9,000,000	
200	14,000,000	
250	18,000,000	5

[별표 3] <개정 2015. 10. 30>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 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 \text{ (오리피스 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³/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³/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m²) = 10,000a(cm²)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²)
(수두 10m는 수압1kg/cm²에 해당)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해서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³)	A = 면적(m²)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